

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시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286억원 투입 본격 추진 등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농림부는 한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양돈의 경우 150개 농가에 420억원을 지원하며, 1천마리 이상 규모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 '08년도 사업비 : 128,660백만원(보조 25,732, 융자 77,196, 자담 25,732)
- 지원조건 :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08년도 사업량 : 총 515개소(한우 200, 양돈 150, 양계 75, 오리 10, 낙농 80)
- 개소당 지원한도액 : 한(육)우 200백만원, 양돈 900, 산란계 1,400, 육계 700, 오리 700, 낙농 200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1286억6000만원, 사업량은 총 515개소이며 오는 2017년까지 5150 개소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법정 가축전염병이 제1종과 제2종에서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하고, 인체 질병과 유사한 병명으로 인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질병 명칭 및 인체 질병명과 서로 달라 통일이 필요한 가축전염병 명칭을 변경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되는 돼지 질병은 돼지전염성위장염(TGE),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위축성비염 등 5개로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체 질병과 유사한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각각 변경시켰다.

■ 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관리하는 제도로 '08년도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농림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양돈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 소·돼지고기 소분할 부위 명칭 변경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확대했다. 쇠고기는 10개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 종전 29개에서 39개 부위로 확대했고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5개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 종전 17개에서 22개 부위로 확대했다. 이 같은 소분할 부위명칭의 확대에 의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축산농가와 유통업체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소득 및 유통 선진화가 기대된다.

■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 음식점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 명사로 개발하여 산지 직접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고품질의 브랜드육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판매시설, 주변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개 내외의 브랜드가 타운 내에 입점하고 산지에서 브랜드육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브랜드육을 쉽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육을 중심으로 한 축산물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도 모하기 위해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은 종돈·종계·종오리 사육농가의 축사 등에 대해 시설 및 개보수(종돈 : 분만틀 시설개선, 종계·종오리 : 축사 및 내부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 분뇨처리자금 시중은행 취급

농업인의 금융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5가지 농업관련 사업자금을 농협 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창업농 지원, 신규 후계농 지원, 후계농 추가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동물등록·판매·장묘업 등록제 도입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대응하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마련돼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지난 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 가축 살처분 축산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상한액 :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이 신설됐다.

■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FTA 등 국내 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 축산업 혐오감 방지 등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가축수송 특장차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간 총 110대(소10, 돼지60, 가금 40)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에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축수송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한 축산물 품질저하방지와 일반인에게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을 없애고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등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물 HACCP 기준원 법정 법인화

HACCP 적용 작업장 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두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6월21일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이 법정 법인으로 재출범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HACCP 적용 작업장 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HACCP 지정제도를 보완했다. 양돈